
당정협의 안건 참고자료

2026. 9. 28.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	---

II. 추진 과제	2
-----------------	---

1.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2
------------------------------------	---

2. 담합 처분시효 연장	3
---------------------	---

3. BRIAS 교육청 연계	3
-----------------------	---

4. 가격재결정명령 법적근거 마련	4
--------------------------	---

5. 자진신고 사업자 감면 혜택 개편	4
----------------------------	---

III. 추진 계획	5
------------------	---

붙임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규정 도입 법률 및 업종

- 금년 상반기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 20조원대 규모* 담합 적발로 시장경쟁 회복 및 가격 인하 효과 등 민생 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

* (관련 매출액) 설탕 3.2조원, 밀가루 5.8조원, 전분당 6.0조원, 인쇄용지 4조원 등

- 하반기에는 식재료, 교육, 에너지, 주거생활 분야의 담합을 집중 감시 중

- 그러나 민생 저해 대규모 담합은 과거 수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 상존

* 민생 필수 품목 반복 담합 사례 (예시)

설탕	'07년 제당 3사 15년간 장기 가격 담합 제재 '26년 제당 3사 4년간 3.2조 원대 가격 담합 적발
밀가루	'06년 8개 제분사 5년간 가격·생산량 담합 제재 '26년 7개 제분사 6년간 5.8조원 대 장기 담합 적발
제지류	'04년 5개 제지사 인쇄용지 가격 담합 제재 '14년 5개 제지사 백판지, 7개 제지사 컵원지 가격 담합 제재 '16년 8개 제지사 인쇄고지 구매가격 담합 제재 '26년 6개 제지사의 4조원대 인쇄용지 가격 담합 적발

- 담합 적발 노력이 경제 전반에 만연한 반복·고질적인 담합의 확실한 근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될 필요

-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을 제고, 담합 시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 과제 추진

< 5개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 과제 >

▲억지력 강화	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
▲적발을 제고	② 담합 처분 시효 연장
	③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교육청 연계
▲실효성 제고	④ 가격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
	⑤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 삭제

【 담합 억지력 강화 】

1.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 (추진 개요)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제도 도입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도입 사례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고 민생과 밀접한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분야의 17개 업종으로 확대

[참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등록취소 등 규정 사례

개별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자가 <u>가격·거래제한·입찰 담합</u> 을 반복하여 9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 처분받은 경우 <u>건설업 등록을 말소</u> (제83조 제13호)
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u>사업자단체 금지행위</u> 를 반복하여 2년 이내 2회 이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받은 경우 관련 <u>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u> 가능(제38조 제2항 제11호)

-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
- (추진 방안)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부처협의 完}
- (공정거래법) 사업자가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별법) 관계기관이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반복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받은 경우’를 추가

[참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을 도입할 법률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구분	관계 법령(부처명)
등록취소·영업정지 (4개 개별법)	소방시설사업법(소방청), 전기공사업법(기후부), 전력기술관리법(기후부), 공간정보관리법(국토부)
영업정지 (13개 개별법)	석유사업법(산업부), 약사법(식약처), 여객사업법(국토부), 화물사업법(국토부), 계량법(산업부), 환경기술법(기후부), 환경시험검사법(기후부), 하수도법(기후부), 폐기물처리법(기후부), 승강기관리법(행안부), 옥외광고물법(행안부), 해양폐기물법(해수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부)

【 담합 적발률 제고 】

2. 담합 처분시효 연장

- ☐ (추진 개요) 점차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행위에 대한 적발률 및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 연장 추진
- ☐ (추진 방안)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

(現) 조사未개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개시 조사 개시일부터 5년 ⇨ 최대 12년
(改) 조사未개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조사개시 조사 개시일부터 5년 ⇨ 최대 15년

※ 국세 부과 분야의 역외거래 부정행위(해외자산 은닉, 조세피난처 등)도 법 위반 포착이 어려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5년의 처분시효 적용

3. BRIAS 교육청 연계

- ☐ (추진 개요) 담합 감시를 위해 예산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입찰 정보가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연계되도록 법적근거 마련
 - 현행 공정거래법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공정위 BRIAS에 공공입찰 자료 제출·협조의무가 있으나 교육청은 미포함
 - * 교육 분야 입찰 담합 사례 : 교복 담합('25.6 구미, '26.3. 광주), 교육청 발주 교육용 태블릿 PC 입찰 담합('26.9. 안건상정)
- ☐ (추진 방안) 공정거래법상 입찰정보 제출 협조 대상 기관에 교육청 명시
 - ※ 나라장터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는 조달청 임의협조를 통해 BRIAS에 연계 중('26.4~)이어서 안정적 자료 협조를 위해서는 법 개정 필요

[참고] BRIAS 개요

- ▶ (정의) 입찰정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입찰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
- ▶ (수집범위) ▲50억원 이상 공사 입찰, ▲1억원 이상 물품·용역 입찰
- ▶ (공정거래법상 수집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 [시스템 연계기관] 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기관
- ▶ (수집자료) 입찰방식, 입찰참가자 정보, 투찰일시, 투찰률·낙찰률 추이, 평가점수 등

【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

4. 가격재결정명령 법적근거 마련

- (추진 개요)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시정조치 유형으로 가격재결정명령을 공정거래법에 명시
 -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제42조)” 및 심사지침상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 부과*
 - * (사례) 인쇄용지 담합(‘26.4.), 제분사 밀가루 담합(‘26.5.), 전분당 담합(‘26.8.)
 - 그러나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 이전의 경쟁 회복 수준으로 재결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
- (추진 방안)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재결정 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가격재결정명령 근거 마련

[참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예시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자진신고 사업자 감면 혜택 개편

- (추진 개요)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1·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시정조치까지 감면하는 혜택 제공

[참고] 현행 자진신고 1·2순위 사업자에 대한 혜택

구분	1순위	2순위
자진신고자 ^{조사개시前}	시정조치·과징금·고발 면제	시정조치 감경, 과징금 50% 감경, 고발 면제
조사협조자 ^{조사개시後}	시정조치 감경 or 면제, 과징금·고발 면제	시정조치 감경, 과징금 50% 감경, 고발 면제

- 그러나 최근 가격재결정명령, 구조적 조치 등 적극적 시정조치를 활용·추진 중인 상황이므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도 재검토 필요
- 시정조치는 담합으로 인한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자진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
 - 특히,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가 자진신고자에게 면제될 경우 시장질서 회복 효과가 제한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 발생

□ (추진 방안)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고발 면제/감경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삭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EU, 미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 리니언시 제도에서도 과징금·형사책임 외에 시정조치까지 면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Ⅲ

추진 계획

- (발의 방안) 담합 근절을 위한 5개 제도개선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
- (발의 시기) 당정 협의 논의 직후 발의 예정

[붙임]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규정을 도입할 법률 및 업종(17개)

구분	부처명	관계법령	제재 수준		업종
			등록취소	영업정지	
안전 생명 분야	소방청	소방시설사업법	○	○	소방시설업
	식약처	약사법	x	○	의약품 제조·수입업
	산업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x	○	고압가스제조업
	기후부	전기공사업법	○	○	전기 공사업
		전력기술관리법	○	○	설계, 감리업
에너지 산업 분야	산업부	계량법	x	○	계량기제조업, 수리업 등
		석유사업법	x	○	석유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
	행안부	승강기관리법	x	○	승강기 제조·수입업, 유지 관리업
		옥외광고물법	x	○	옥외 광고물 사업
	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	○	측량업
환경 분야	기후부	환경기술법	x	○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시험검사법	x	○	측정 대행업
		하수도법	x	○	분뇨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법	x	○	폐기물처리업
	해수부	해양폐기물법	x	○	해양폐기물관리업
운송 분야	국토부	여객사업법	x	○	여객운송업 등
		화물사업법	x	○	화물운송업 등